

③ 사회복지요원은 복무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군부대외의 시설에서 단체숙박생활을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택 또는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개별 또는 소규모의 숙박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거리·교통상의 이유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2. 특정근무지역에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수가 과소한 경우
3.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동료와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직무수행 및 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및 생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2(사회복지요원의 신상이동통보)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자택에서 숙박생활을 하는 사회복지요원으로서 그 가족 전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4.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폐쇄·운영중단 또는 이동된 때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사회복지요원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 복무시설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의13(복무중 양심적병역거부자의 판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위원회는 그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14(사회복지요원의 소집취소)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혀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한 때
2. 제43조의13의 규정에 따라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 받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 또는 제43조의11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숙박생활을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43조의10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처분을 4회 이상 받은 때
5. 단체숙박생활시 감독관 등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제55조제1항 본문중 “보충역”을 “보충역(사회복지요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2국민역”을 “제2국민역(제4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종장교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사교육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심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여야 한다.

4.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신청한 자로서 그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63조제2항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사회복지요원소집”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소집대상보충역중 제6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선원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사유로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 종료 전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1.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제36조, 제43조의6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편입

제7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공익근무요원·사회복지요원의 소집”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공익근무요원·사회복지요원의 소집”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3조의14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제73조중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4항 및 제75조의2제1항중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3호중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군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사회복지요원의 복무”로 한다.

제8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다만, 제43조의6 또는 제43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되거나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만,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신청한 자로서 그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제2항중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주 또는 제43조의12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장이 제40조·제43조의12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의 허위 신청 등) ①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

을 빙자하여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된 사람
2. 신청인을 대리하여 제4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은 사람

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8조제1항2호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89조의2제1호중 “공익근무요원”을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제91조 전단중 “공무원 ·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를 “공무원 · 의사 · 치과의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로, “연기 또는 면제”를 “면제 · 변경 또는 연기”로 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장(사회복지시설의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사회복지요원을 제43조의8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복무분야와 복무 시설외의 분야와 시설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공포 후 징집 또는 소집 전에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집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3.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종전의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를 위반한 사람
4. 현역병(제21조 ·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무중인 사람

③(복무기간에 대한 특례) 현역병으로서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징집 등의 연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심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한다.

⑤(형의 집행에 관한 특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종전의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를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서 인정받은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이미 집행된 형기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에 삽입한다. 또한 종전의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양심적병역거부자도 이 부칙에 따라 면소판결하고 구속기간등을 복무기간에 삽입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집(召集)”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 무자증 예비역(豫備役)·보충역(補充役) 또는 제2국민역(第2國民役)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u>공익분야</u> 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사회복지요원”이라 함은 제43조의9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 15. (생 략)	14.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5條(兵役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第5條(兵役의 종류) 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보충역:징병검사(徵兵検査)를 받아 현	3. -----

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사정에 의 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現役兵入營對 象者)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 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정병전담의 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 연구요원· <u>산업기능요원</u> 으로 복무 또 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 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法 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 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 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u>산업기능요원</u> <u>또는 사회복지요원</u>
4. · 5. (생략) ② · ③ (생략)	산업기능요원 · 사회복지요원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사회복지요원 의 복무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	第43條(公益勤務要員등의 實態調査) 지방병 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공익 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 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 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 정업체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第43條(公益勤務要員등의 實態調査) <u>산업기능요원 및 사회</u> <u>복지요원</u>
第42條(公益勤務要員등의 복무기간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 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 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 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 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u>산업</u> <u>기능요원</u> 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 간의 조정의 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 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 할 수 있다.	① · 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산업 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신설>	제4절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및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1. ~ 3. (생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 ~ 3. (현행과 같음) ②	<신설>	제43조의2(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 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 로 집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 고자 하는 사람(이하 “양심적병역거부 자”라 한다)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병역거부 자의 인정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신사 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3(양심적 병역거부판정위원회)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지방양심적 병역거부판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양심적 병역거부판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철학·종교학·심리학·사회학 또는 정치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종교계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계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신 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위원회의 심사) ① 지방위원회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인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자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120일”은 “90일”로 본다.

<신 설>

제43조의5(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p><u><신 설></u></p> <p><u>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u>③누구든지 위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언할 수 있다.</u></p> <p><u>제43조의6(사회복지요원의 편입) 제4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로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한다. 이 경우 현역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u></p> <p><u>제43조의7(사회복지요원의 업무) 사회복지 요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지원한다.</u></p> <p><u>제43조의8(사회복지요원의 배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해의 사회복지 요원의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복무시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요원의 적성·전공·자격 및 소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복무분야와 복무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43조의9(사회복지요원의 소집) ①지방병무 청장은 사회복지요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복무분야를 정하여 소집한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u></p> <p><u>③그 밖에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43조의10(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등)</u></p> <p><u>①사회복지요원은 육군 현역병의 1.5배를 복무하여야 하며, 복무를 마친 때에는 그 소집을 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u></p> <p><u>②사회복지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p> <p><u>③제43조의11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u></p> <p><u>④사회복지요원이 제43조의14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때에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복무기간 3월마다 1월을 감축한다.</u></p> <p><u>⑤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복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경고처분하고,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u></p>
--	---------------------------	---

여 복무하게 한다.

⑥사회복지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때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1(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등) ①사회복지요원은 그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사회복지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사회복지요원은 복무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군부대외의 시설에서 단체숙박생활을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택 또는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개별 또는 소규모의 숙박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거리·교통상의 이유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신 설>

2. 특정근무지역에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수가 과소한 경우

3.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동료와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직무수행 및 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및 생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12(사회복지요원의 신상이동통보)

①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자택에서 숙박생활을 하는 사회복지요원으로서 그 가족 전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

다고 인정한 때

4.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폐쇄·운영중단 또는 이동된 때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사회복지요원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 복무시설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의13(복무중 양심적병역거부자의 판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위원회는 그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14(사회복지요원의 소집취소)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 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한 때
2. 제43조의13의 규정에 따라 복무증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 또는 제43조의11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숙박생활을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43조의10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 처분을 4회 이상 받은 때
5. 단체숙박생활시 감독관 등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第55條(教育召集對象등) ① 교육소집은 군사 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60일이 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 기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 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57條(學生軍事教育등) ① 고등학교이상의

第55條(教育召集對象등) ①-----
-----보충역(사회복지요원을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국민역(제43
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국민역
에 편입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第57條(學生軍事教育등) ①-----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第58條(醫務·法務·軍宗將校등의 兵籍編入) ① ~ ③ (생 략)
④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⑦ (생 략)

第60條(徵兵検査 및 入營등의 延期) ① (생 략)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58條(醫務·法務·軍宗將校등의 兵籍編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군종장교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사교육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第60條(徵兵検査 및 入營등의 延期)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심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第63條(家事事情으로 인한 轉役등) ① (생 략)
②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한다.

③ (생 략)

第65條(兵役處分變更등) ①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나 해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병역 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신청한 자로서 그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63條(家事事情으로 인한 轉役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③ (현행과 같음)

第65條(兵役處分變更등) ①

..... .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사회복지요원소집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 후단과 제6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 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 소집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⑥ ~ ⑦ (생 략)

第68條(兵役義務의 延期 및 減免의 제한) 제86조 내지 제88조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罪)를 범한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 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

⑤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소집대상보충역중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선원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사유로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 종료 전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第68條(兵役義務의 延期 및 減免의 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6조제1항제3호 · 제4호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편입

2. · 3. (생 략)

4.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第71條(入營義務등의 減免) ① 징병검사 ·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생 략)

<신 설>

3. ~ 7. (생 략)

8. 제6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충역에

1. 제26조제1항제3호 · 제4호, 제36조, 제43조의6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편입

2. · 3. (현행과 같음)

4. -----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

第71條(入營義務등의 減免) ① --

----- 공익근무요원 · 사회복지요원의 소집 -----

1. -----
----- 공익근무요원 · 사회복지요원의 소집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3조의14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3. ~ 7. (현행과 같음)

8. -----

<p>경우 보상대상자의 해당요건과 그 확인 ·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p>	
<p>③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 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 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p>	<p>④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 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p>
<p>⑤ (생 략)</p>	<p>⑤ (현행과 같음)</p>
<p>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 ① 제26조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 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 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 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 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 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p>	<p>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 ① 제2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p>
<p>② · ③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第76條(兵役義務不履行者에 대한 制裁)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p>	<p>第76條(兵役義務不履行者에 대한 制裁) ①</p>

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
용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해직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
하고 있는 사람

② · ③ (생 략)

第83條(戰時特例) ① (생 략)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
충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
역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
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현역병입영대
상으로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단서
신설>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및 징집·소집연기의
정지 <단서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3. 군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사회복지
요원의 복무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83條(戰時特例)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만, 제43조의6 또는
제43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요
원으로 편입되거나 소집된 사람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 다만,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
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신

5의2. ~ 9. (생 략)

③ (생 략)

第84條(身上移動通報不履行 등) ①

(생 략)

②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
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
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신 설>

청한 자로서 그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84條(身上移動通報不履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주 또는 제43조의12의 규정에 따
른 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장이 제40조 · 제43조의12 또는 제67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의2(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의 허위
신청 등) ①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될 목적
으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빙자하여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양심
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을 한 것이 명
백한 경우 신청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된
사람

2. 신청인을 대리하여 제43조의4의 규정

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은 사람

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8조(入營의 기피)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
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
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
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에 처한다.

1. (생략)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 4. (생 략)

② (생략)

第89條(公益勤務要員의 代理服務)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
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第89條의2(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이탈등)

第88條(入營의 기회) ①

The figure consists of ten horizontal lines arranged vertically. Each line starts at a different point on the left and ends at a higher point on the right, indicating a positive slope or trend across all lines.

1. (현행과 같음)

2.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89條(公務勤務要員의 代理服務)

고이그물 유통 또는 사회복지요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산입은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이상 경고처분된 사람

2. · 3. (생 략)

91條(虛偽證明書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法에 복무기간을 단
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
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92條(専門研究要員등의 編入 및 從事義務違反等) ①·② (생략)

<신 설>

The figure consists of three thin, dark grey horizontal lines. The top line is perfectly straight. The middle line is slightly curved, dipping downwards towards the right side. The bottom line is also slightly curved, dipping downwards towards the left side.

1.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지 요원

2. · 3 (현행과 같음)

91條(虛偽證明書등의 발급) 공무원·의사·치과의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면제·변경 또는 연기-----

2條(専門研究要員등의 編入 및 從事義務違反 등) ① : ② (현해과 강우)

③ 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위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장(사회복지시설의장을 위하여 사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사회복지요원을 제43조의8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복

무분야와 복무시설외의 분야와 시설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94조의2(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제)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양심적 병

역거부 과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

로 본다.

【兵役法中改正法律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2
----------	-----

발의연월일 : 2004. 11. 19.

발의자 : 노회찬 · 강기갑 · 권영길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현애자 의원(10인)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
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 양심의 자
유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대체
복무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단체 또는 시설에서 아동 · 노인 · 장애인 또는 여성
등의 보호 · 치료 · 요양 · 훈련 · 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또는 소방 · 의료 · 재
난 또는 구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안 제2조제1항제9호의2).

- 나. 대체복무요원의 판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3조의2).
- 다.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공무원이었던 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함(안 제3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 라.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사,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대체복무시설의 종류에 대한 결정,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3조의4).
- 마.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음(안 제33조의5제1항, 제4항).
- 바.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정함(안 제33조의6).
- 사. 위원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과 제척관계에 있는 등의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척되며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33조의7 및 제33조의8).
- 아.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함(안 제33조의9).
- 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예비군에 대한 대체복무신청의 판정, 대체복무시설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3조의10).
- 차.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시에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절차, 기간에 대해서 고지

- 의무가 있음(안 제33조의11).
- 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려고 하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에 대체복무신청을 하여야 하고,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복무 중에 대체복무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영 또는 소집은 연기됨(안 제33조의12제1항 내지 제3항).
- 타. 지방대체복무위원회 및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33조의 13 및 제33조의15제4항).
- 파. 지방대체복무위원회 및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기간·방식에 위배된 경우에는 각하, 이유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인정시에는 대체복무분야를 복수로 지정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함(안 제33조의14제1항내지제4항 및 제33조의15제4항).
- 하.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현역병과 보충역에 대해서는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간주함(안 제33조의14제4항 단서, 동조제5항).
- 거.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각하와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심사하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대체위원회와 같이 각하, 기각,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 등을 함(안 제33조의15).
- 너.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 자는 대체복무분야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33조의16).
- 더.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의관련업무를 행하되 국군의 업무, 경비교도대의 업무, 전투경찰대의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대인용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3

조의18).

- 라. 대체복무시설은 지방위원회가 정하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9).
- 마.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육군현역병의 1.5배로 하고 그 소집을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다(안 제33조의22제1항, 제4항).
- 바. 대체복무요원은 단체숙박활동을 하며 수가 적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만 그 예외를 인정함(안 제33조의23제3항).
- 서.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되었다는 혐의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안 제33조의25제2항, 제89조의2제1호, 제4호).
- 어.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소집에서 제외하고, 전시근로소집대상에 포함시키며,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제외하나, 병력동원훈련업무에서 제외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기간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안 제44조, 제53조제1항제3호, 제49조제2항).
- 저. 대체복무요원을 마친 자는 교육소집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안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 처. 학생군사교육을 받은 자가 대체복무요원이 된 경우 현역과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기간을 단축함(안 제57조제1항).
- 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부모나 형제·자매 중 전사자가 있거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역과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안 제63조제2항).
- 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의무면제 나이를 현영병입영의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와 같이 31세부터로 함(안 제71조제1항).

- 파. 다른 현역이나 보충역과 동등하게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복학을 보장하고, 순직이나 공상시 국가의 보상의무를 규정하며, 대체복무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함(안 제73조,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제3호).
- 하.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이나 병력동원소집대상이 되지 아니함(안 제83조제2항제4호 단서).
- 고. 대체복무시설의 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신상이동통보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4조제2항).
- 노. 대체복무요원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대체복무요원을 대리하여 복무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88조제1항제2호, 제89조).
- 도. 대체복무요원이 직무에서 8일 동안 이탈(단체숙박시설이탈포함)하거나 근무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89조의2제1호, 제4호).
- 로. 종교인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명서을 발부해 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91조).
- 모.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시행함(안 부칙 제1조).
- 보. 이 법 시행 당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자, 병역법제88조 또는 군형법제44조를 위반한 자,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 60일 이내에 대체복무신청 가능(안 부칙 제2조).
- 소.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법제88조 또는 군형법제44조를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대체복무

요원에 편입한다(안 부칙 제4조제1항).

- 오.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은 정지되고,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한다(안 부칙 제4조제2항, 제3항).
- 조. 예비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대체복무를 인정함(안 부칙 제5조).

【兵役法中改正法律案】

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대체복무요원이라 함은 제33조의14제4항 및 제33조의15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단체 또는 시설(이하 “대체복무시설등”이라 한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또는 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이하 “사회복지관련업무”라 한다) 또는 소방·의료·재난 또는 구호 등의 업무(이하 “공익관련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사람”을 “사람(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한다.

제5장에 제1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제33조의2(대체복무위원회) 제2조제1항제9호의2에 정한 대체복무요원의 판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의3(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자로서 철학·종교학·심리학·법학·사회학 또는 정치학 등을 전공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정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4. 4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⑤ 중앙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중앙위원회의 업무)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사
2. 제33조의19제1항에 규정한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대체복무시설의 종류에 대한 결정
3.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제33조의5(중앙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④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3조의7(위원의 제척)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신청인과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신청인의 참고인으로 된 경우

제33조의8(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의9(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33조의3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한다.

④ 제33조의3제4항 내지 제5항, 제33조의5 내지 8은 지방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3조의10(지방위원회의 업무)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3조의12제1항, 제2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2. 기타 이 법이 규정한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3.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4제1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4. 제33조의19제2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시설의 지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수행

제33조의11(고지의무) 지방병무청장은 제11조에 정한 징병검사시에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대체복무신청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제33조의12(대체복무신청) ①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체복무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산하의 지방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현역병(제21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복무 중인 자도 제1항에 정한 기간에 불구하고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입영 또는 소집은 연기된다.

1.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현역병입영

2.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현역병입영

3. 제29조제1항에 규정한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4. 제55조제1항에 규정한 교육소집(공익근무요원에 한한다)

제33조의13(조사) ①지방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영대상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입영대상자등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는 일

2. 입영대상자등 본인 또는 참고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는 일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5.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의14(결정) ①결정은 서면으로 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인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각한다.

1. 신청이 제33조의12제1항에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

2. 신청이 제33조의12제1항에 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③지방위원회는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④지방위원회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하기로 결정(이하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이라 한다)하고, 신청인의 희망·자질·학력·적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체복무분야를 복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신청인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복무 중인 자로써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이하 “비집총복무결정”이라 한다)하여야 하고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이하 “교육소집면제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⑤제4항 단서에 의한 비집총복무결정 또는 교육소집면제결정을 받은 자도 이 법에 의한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

⑥제1항의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지방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의15(재심사) ①지방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정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33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정한 기간을 도과하거나 방식에 위반한 경우

3. 제33조의14제4항에 정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④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⑤제33조의13, 제33조의14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은 중앙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3조의16(대체복무분야의 선정) ①제33조의14제4항 및 제33조의15제5항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 편입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체복무분야를 선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기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분야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의17(대체복무요원의 편입) 제33조의14제4항, 제33조의15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 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의 병적은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제33조의18(대체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및 대체복무시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

설등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를 보조·지원한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1. 국군조직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의 업무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도대의 업무
3. 전투경찰대설치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의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업무로써 대인용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제33조의19(대체복무시설의 지정등) ①중앙위원회는 매년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대체복무시설등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통보를 받은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의 희망·자질·학력·적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시설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지정시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정한 대체복무시설등이 지방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2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시설등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규정한 취소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0(대체복무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지방병무청장은 제33조의19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체복무시설등으로부터 다음해의 소요인원을 요청받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제33조의21(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제33조의16제1항에 의하여 정해진 복무분야에 따라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그 밖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2(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대체복무요원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여야 한다.

②대체복무요원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기간에서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복무한다.

③제33조14제4항 단서 또는 제33조의15제5항에 의하여 비집총복무결정 또는 교육소집면제결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규정한 복무기간에서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복무한다.

④대체복무요원이 복무를 마친 때에는 그 소집을 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제33조14제4항 단서 또는 제33조의15제5항에 의하여 비집총복무결정 또는 교육소집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⑤제33조의2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⑥제30조제2항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⑦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의 계산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3(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①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은 제33조의16에 의하여 선정된 대체복무분야에 대체복무요원을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그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대체복무시설등의 장 또는 이를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대체복무요원은 복무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군부대외의 시설에서 단체숙박생활을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택 또는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개별 또는 소규모의 숙박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근무지역의 대체복무요원의 수가 단체숙박생활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체숙박생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대체복무시설등의 장 또는 이를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직무수행 및 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생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4(대체복무요원의 신상이동통보) ①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체복무시설등을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병무청장 및 지방위원회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의2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처분된 때

3. 제33조의23제3항에 규정한 자택에서 숙박생활을 하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4.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시설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위원회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의19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기관등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

청장은 새로 지정된 대체복무기관에게 소요인원을 신청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배정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인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기관등의 장은 제33조의16에 규정된 복무분야에 부합하는 업무와 근무지를 지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복무하게 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25(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① 제33조제1항은 대체복무요원에 게 준용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소집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2제1항에 규정한 복무기간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실제로 복무한 기간을 뺀 잔여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3조중 “ 및 산업기능요원”을 “· 산업기능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개정한다.

제4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 소집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대체복무시설등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관한 대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 단서에 의해 병력동원소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55조제1항 본문중 “보충역”을 “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2국민역”을 “제2국민역(제33조의2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을 “보충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또는 제2국민역(제33조의2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체복무를 마친자가 제1항단서 및 제2항본문에 의하여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7조제1항중 “공익근무요원”을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은 제33조의22제4항을 준용한다.

제7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를 “현역병입영 ·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대체복무요원소집의무”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3조중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능요원 ·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제1항중 “공익근무요원”을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각각 한다.

제76조제1항제3호중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군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복무”로 한다.

제83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의17 또는 제33조의21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거나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제2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의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을 한 자로서 중앙위원회의 재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제2항중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주 또는 대체복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제33조의24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정한다.

제88조제1항제2호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89조중 “공익근무요원”을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호중 “공익근무요원”을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이탈”을 “이탈(대체복무요원은 단체숙박생활에서 이탈한 것을 포함한다)”로 각각 하고, 동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한 자 제91조중 “또는 치과의사로서”를 “· 치과의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로, “연기 또는 면제”를 “연기·변경(대체복무요원으로의 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면제”로 각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산하의

지방위원회에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3조의12제3항은 준용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혼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종전의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를 위반한 사람

3.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보충역 복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지방위원회 및 중앙위원회는 부칙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3조의14제4항 단서에 불구하고,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자는 제33조의22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에서 실제로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복무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자의 복무기간이 제33조의22제1항이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충역의 복무기간에서 실제로 복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③제2항에 정한 기간의 복무를 마친 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제4조(형의 집행등에 관한 특례) ①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종전의 병역법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를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복무신청을 하여 심사 결과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이 법에 의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이미 집행된 형기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②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재판은 중앙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③ 제2항에 정한 자가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미결구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예비군의 대체복무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자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병역법 제33조의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법 제33조의15에 규정한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의 효력은 정지된다.

② 예비군의 대체복무에 관해서는 병역법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10, 제33조의13 내지 제33조의16, 제33조의18 내지 제33조의20을 준용하고 그 외 예비군의 대체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9의 2. 대체복무요원이라 함</u> <u>은 제33조의14제4항 및 제33조의15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편입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단체 또는 시설(이하 “대체복무시설등”이라 한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또는 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이하 “사회복지관련업무”라 한다) 또는 소방·의료·재난 또는 구호 등의 업무(이하 “공익관련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u>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第5條(兵役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第5條(兵役의 종류) ①-----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보충역:징병검사(徵兵檢査)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	3. ----- -----.

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現役兵入
營對象者)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정
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
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
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신설〉

<신 설>

제33조의2(대체복무위원회) 제2조제1항제9호의2에 정한 대체복무요원의 판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제33조의3(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相當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자로서 철학·종교학·심리학·법학·사회학 또는 정치학 등을 전공한 자

산업기능요
원 · 대체복무요원

사람(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제1절의2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신 설>

<신 설>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에 정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4. 4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⑤ 중앙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조의4(중앙위원회의 업무)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사
 2. 제33조의19제1항에 규정한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대체복무시설의 종류에 대한 결정
 3.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 33조의5(중앙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④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신 설>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④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신 설>

<신 설>

<신 설>

자

제33조의7(위원의 제척)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신청의 심사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신청인과

친족 · 호주 ·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신청인의

참고인으로 된 경우

제33조의8(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제척)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의9(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33조의3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④ 제33조의3제4항 내지 제5항, 제33조의5 내지 8은 지방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3조의10(지방위원회의 업무)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3조의12제1항, 제2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2. 기타 이 법이 규정한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3.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4제1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4. 제33조의19 제2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시설의 지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수행

<신 설>

제33조의11(고지의무) 지방병무청장은 제1조에 정한 징병검사시에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대체복무신청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12(대체복무신청) ① 제14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신청인”이라 한다)은

<신 설>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체복무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산하의 지방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현역병(제21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복무 중인 자도 제1항에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입영 또는 소집은 연기된다.

1.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현역병입영
2.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현역병입영
3. 제29조제1항에 규정한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4. 제55조제1항에 규정한 교육소집(공익근무요원에 한한다)

제33조의13(조사) ① 지방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영대상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입영대상자등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는 일
2. 입영대상자등 본인 또는
참고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는 일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5.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14(결정) ①결정은 서면으로 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인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각한다.

1. 신청이 제33조의12제1항에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
2. 신청이 제33조의12제1항에 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③지방위원회는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신 설>

- ④지방위원회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하기로 결정(이하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이라 한다)하고, 신청인의 희망·자질·학력·적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체복무분야를 복무로 지정하여 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신청인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복무 중인 자로 써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이하 “비집총복무결정”이라 한다)하여야 하고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이하 “교육소집면제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⑤제4항단서에 의한 비집총복무결정 또는 교육소집면제결정을 받은 자도 이 법에 의한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
 - ⑥제1항의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⑦지방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33조의15(재심사) ①지방위원회의 결정

<신 설>

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정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33조의14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

2. 제1항에 정한 기간을 도

과하거나 방식에 위반한 경우

3. 제33조의14제4항에 정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④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⑤ 제33조의13, 제33조의14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은 중앙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3조의16(대체복무분야의 선정) ① 제33조의14제4항 및 제33조의15제5항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 편입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체복무분야를 선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서면

<신 설>

<신 설>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기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분야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의17(대체복무요원의 편입) 제33조의14제4항, 제33조의15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을 받은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자의 병적은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제33조의18(대체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및 대체복무시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설등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의관련업무를 보조·지원한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1. 국군조직법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국군의 업무

2.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

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도대의 업무

3. 전투경찰대설치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의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

는 업무로써 대인용 무기를 소지한

<신 설>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제33조의19(대체복무시설의 지정등) ①중

양위원회는 매년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대체복무시설등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통보를 받은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의 희망·자질·학력·적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시설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지정시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정한 대체복무시설등이 지방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2항에 규정한 대체복무시설등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규정한 취소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0(대체복무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지방병무청장은 제33조의19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체복무시설등으로부터 다음해의 소요인원을 요청받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1(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제33조의16제1항에 의하여 정해

진 복무분야에 따라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그 밖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2(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대체복무요원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여야 한다.

②대체복무요원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기간에서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복무한다.

③제33조14제4항 단서 또는 제33조의15제5항에 의하여 비집총복무결정 또는 교육소집면제결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규정한 복무기간에서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복무한다.

④대체복무요원이 복무를 마친 때에는 그 소집을 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제33조14제4항 단서 또는 제33조의15제5항에 의하여 비집총복무결정 또는 교육소집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복무

를 마친 경우에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⑤ 제33조의2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제30조제2항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⑦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의 계산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3(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①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은 제33조의16에 의하여 선정된 대체복무분야에 대체복무요원을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그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대체복무시설등의 장 또는 이를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체복무요원은 복무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군부대외의 시설에서 단체숙박생활을 한다. 다

<신 설>

만,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택 또는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개별 또는 소규모의 숙박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근무지역의 대체복무요원의 수가 단체숙박생활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체숙박생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대체복무시설등의 장 또는 이를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직무수행 및 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생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4(대체복무요원의 신상이동통보)

①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체복무시설등을 관할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병무

<신 설>

청장 및 지방위원회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의2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처분된 때

3. 제33조의23제3항에 규정한 자택에서 숙박생활을 하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4.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시설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위원회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의19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기관 등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지정된 대체복무기관에게 소요인원을 신청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배정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인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기관등의 장은 제33조의16에 규정된 복무분야에 부합하는 업무와 근무

지를 지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복무하게 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25(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①제33조제1항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준용한다.

②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소집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2제1항에 규정한 복무기간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실제로 복무한 기간을 뺀 잔여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第42條(公益勤務要員등의 복무기간 조정)

- ①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 ①-----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요원-----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조정의 범위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第43條(公益勤務要員등의 實態調査)지방 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第43條(公益勤務要員등의 實態調査)----- · 산업기능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第44條(兵力動員召集對象)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第44條(兵力動員召集對象)----- 다만,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第49條(兵力動員訓練召集對象등)(생략)	第49條(兵力動員訓練召集對象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 소집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대체복무시설등에서 사회복지관련 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관한 대체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第53條(戰時勤勞召集對象등) ① (생략)	第53條(戰時勤勞召集對象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3. 제44조 단서에 의해 병력동원소집대상에서 제외된 자
第55條(教育召集對象등) ①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第55條(教育召集對象등) ①----- 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다만, 제2국민역(제33조의2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
	②-----보충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또는 제2국민역(제33조의2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국민역에

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이내로 한다.

<신설>

第57條(學生軍事教育등) 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 ④(생략)

第63條(家事事情으로 인한 戰役등) ①(생략)
②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한다.

<단서 신설>

③(생략)

第71條(入營義務등의 減免) ①징병검사 ·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

③대체복무를 마친 자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본문에 의하여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第57條(學生軍事教育등) ①—————
—————

·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② ~ ④(현행과 같음)

第63條(家事事情으로 인한 戰役등) ①(현행과 같음)

②————·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다만, 대체복무요원은 제33조의22제4항을 준용한다.

③(현행과 같음)

第71條(入營義務등의 減免) ①—————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 10. (생략)

②(생략)

第73條(復學保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第75條(報償 및 加療) ① ~ ③(생략)

④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현역병입영·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1.————·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2. ~ 10.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第73條(復學保障)—————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요원—————.

第75條(報償 및 加療)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및 징집·소집연기의 정지 <u><단서 신설></u>	5. ----- ----- <u>. 다만, 제33조의12제1항의 규정에 따 라 대체복무신청을 한 자로서 중앙위 원회의 재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 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5의2. ~ 9. (생 략) ③(생 략)	5의2. ~ 9.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第84條(身上移動通報不履行등) ①(생 략) 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 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 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第84條(身上移動通報不履行등) ①(현행 과 같음) ②고용주 또는 대체복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 0조 · 제33조의24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③(생 략) 第88條(入營의 기피) ①(생 략) 1. (생 략)	③(현행과 같음) 第88條(入營의 기피)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공의근무요원소집은 3일 3. (생 략) ②(생 략)	2. 공익근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 일 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第89條(公益勤務要員의 代理服務) 공익근 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 무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89條(公益勤務要員의 代理服務) 공익근 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 ----- -----.
第89條의2(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이탈등)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이탈등)

(생 략)	(현행과 같음)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	1. 공익근무요원 · 대체복무
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이상 경고처분된 사람	요원----- ---이탈(대체복무요원은 단체숙박생활에서 이탈한 것을 포함한다)-----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한 자
第91條(虛偽證明書등의 발급) 공무원 ·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 ·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第91條(虛偽證明書등의 발급) ----- · 치과의사 또는 종교인-----연기 · 변경(대체복무요원으로의 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면제----- ----- -----.

예 산 명 세 서

1. 총 소요예산 : 238억 원

2. 산출근거

가.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설치 (안제33조의2, 제33조의3) : 17억 원

- 상임위원 보수(4인) : 2억(/년)
- 사무국 운영비 : 15억(/년)
- 보수(10인) 5억 원, 기본경비 10억

나. 10개 지방병부별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의 설치 (안제33조의2, 제33조의9) : 150 억원

- 10개소 사무국운영비 : 150억(/년)
- 1개소 사무국 운영비 : 15억(보수(10인) 5억 원, 기본경비 10억)

다.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및 비용(안제33조의23제3항) : 36억 원

- 인 원 : 1,000여명 *360만원(/년) = 36억 원(/년)

라. 단체숙박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제33조의23제2항) : 35억 원

- 설치비 : 10개소 * 3억= 30억 원
- 운영비 : 10개소 * 5천만원 = 5억 원(/년)

**별첨 2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결정 147

○ 대법원 판결 205